TOP to TOE

강정훈 경찰학개론 법령집

Police Science

신정3판을 위한 추록

· 최근 개정법령 완벽반영
· 최근 시험유형에 최적화된 경찰학개론 관련 법령총정리
· 경찰학개론 관련 판례정리

WILLBES

추록 | 신정3판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령

01 p.10 제2조 1. 아래 – 추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인권**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02 p.12 제33조 아래 – 제35조 추가

제35조(회의) ①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회의 개최 주기 및 방식은 자율적으로 한다.

④ 지방청 인권위원회 회의 통한 의결은 (　　)의 찬성으로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03 p.14 제4조 ③, ④ – 추가

③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04 p.15 제6조 아래 – 제7조 추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05 p.16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 수정, 추가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　　)** 또는 **매 회계연도에 (　　)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100만원 / 300만원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의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　)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제외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분	치안총감	치안정감~총경	경정이하
상한액	(　　)	(　　)	(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　　)에게 미리 (　)으로 (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속기관의 장 / 서면 / 신고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　)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일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회

⑤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　　)의 (　)을 받아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 / 승인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등) ① 공무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　)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일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　)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일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초과 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　)**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포함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금전차용 (부동산대여)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6 p.17 제17조 - 수정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07 p.18 경찰법 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추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　　) 또는 매 회계연도에 (　　)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00만원 / 300만원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만원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만원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만원	5만원

3. **사적 거래((　)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증여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구분	장관급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 )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일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08 p.19 제5조 ② – 정답 수정

7명 → 포함한 7명

09 p.25 제2조 ② – 수정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　　)을 둔다.** **경찰병원**

10 p.26 제41조 ① – 수정

제41조(지방경찰청 차장) ① 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둔다.

11 p.29 제14조 ②③④ – 추가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12 p.35 제80조 ① – 수정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　　)**을 감한다.**

3개월간 / 전액

13 p.37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9조 수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 ①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　　)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　　) **경찰공무원 중에서** (　　) **임명**한다.

5명 이상 7명 이하
인사담당국장
총경 이상 /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14 p.37 제5조 3., 제6조, 제7조 ② 3. - 수정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3. 그 밖에 ( ) **또는** ( )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경찰청장 / 해양경찰청장**

제6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 )**의 추천을 받아** ( )**의 제청으로** ( )**를 거쳐** ( )**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 ( ), ( ), ( ), ( ) **및** ( )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 / **전보 / 휴직 / 직위해제 / 강등 / 정직 / 복직**

② ( )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 ), ( ) **및** ( )은 ( )**의 제청**으로 ( )**를 거쳐** ( )**이 한다.** — **경정** / **신규채용 / 승진임용 / 면직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국무총리 / 대통령**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 ). —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5 p.39 제9조 ① - 수정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 후보생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6 p.40 경찰공무원임용령 – 교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7 p.40 제10조 ④ 4. 아래 – 경찰공무원임용령 추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　　).**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　　).**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 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　　)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 **60퍼센트**
3.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　　) 미만인 경우** — **50퍼센트**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8 p.41 제11조 ② – 수정

② ( )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 )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대통령령 – 승진시험 : 50%, 승진심사 : 50%).

경무관 / 경정 이하

19 p.41 제11조의2 ①, 제12조 ①, ②, 제13조 ① – 수정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 ) **이상 근속**자 — **4년**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 ) **이상 근속**자 — **5년**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 ) **이상 근속**자 — **6년 6개월**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 ) **이상 근속**자 — **10년**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 )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 **5배수**

제1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0 p.42~43 제15조 ①, 제17조 ①②③, 제20조 ③, 제21조 – 수정

제15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 ) **또는** ( )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 / 해양수산부령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1 p.44 제24조 ④ – 수정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 )**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년

22 p.45 제25조 ①, 제26조 ②, 제27조 – 수정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6조(징계위원회)

② ( )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총경 이하**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 ) **이상의** ( ) **및** ( )과 ( ) **이상의** ( ) **및** ( )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 ) **및** ( )**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무관 / 강등 / 정직 / 경정 / 파면 / 해임

총경 / 경정

23 p.46 제31조 – 수정

제31조(벌칙)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 ) **이하의 징역**과 (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으로 한다.

3년 / 3년

10년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 )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 200만원

24 p.48 제3조 – 수정

제3조(경과) ① ( )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 )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보안경과 **4. 특수경과**

다. ( )경과

라. ( )경과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 )할 때**에 **경과를 부여( ).**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과 및 특기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⑤ 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총경

경정 이하

항공

정보통신

신규채용 / 하여야 한다

25 p.50 제26조 위 – 제25조 ① 추가

제25조(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 )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3년

26 p.50 제27조, 제28조 ② - 수정 및 추가

제27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 )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 )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 2년

1. 직제상의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의 전보하는 경우
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경찰기동대 등 경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10.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1. 시보임용 중인 경우
12.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인사교류)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p.53 제24조 위 – 추가

제4장 승진심사

제14조(승진심사)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명 이상 7명 이하**

④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청·소속기관등·경찰서와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에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명 이상 7명 이하**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감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18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 )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 )로 한다. **비공개**

28 p.56 제3조 ②, 제4조 ② – 수정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　　)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　　)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경감 이상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경감 이하

1.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해양경찰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및 정비창 : **소속 (　　)의 경찰공무원**

경위 이하

2. **의무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 소속 (　　)의 경찰공무원**

경사 이하

29 p.58~59 제12조 ②, ⑤, 제13조, 제15조, 제19조 ① - 추가 및 수정

제12조(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또는 국외 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등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①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 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30 p.62 제11조, 제13조, 제14조 - 추가 및 수정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 )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 )**를 받아야 한다.

2시간
신고
허가

제14조(비상소집) ①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31 p.64 제17조 아래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추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 )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 ) 이상**인 선물로 한다.

100달러
10만원

32 p.65 제3조 ② - 수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 ).**

있다

33 p.68 제8조의2, 제9조 – 수정

제8조의2(국제협력) ( )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할 수 있다**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 )**와** ( )**에 유치장을 둔다.** — **경찰서 / 해양경찰서**

34 p.72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①, ②, ④, 제11조 ① – 추가 및 수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경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35 p.73 제12조 위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추가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① 경찰청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　　)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과장급**

②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보상금 지급 금액
3. 보상금 환수 여부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　　)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20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보상금의 최고액은 (　　)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5억원**

제21조(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심사·의결한다. 이 경우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2. 범죄피해의 규모
3. 범인 신고 등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
4.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한 제반 사정

36 p.74 제5조 – 수정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37 p.75 제11조, 제13조, 제14조 – 추가

제11조(동물의 사살)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석궁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총기·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38 p.77 경찰장비관리규칙 – 수정

39 p.9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로 위치 변경

40 p.81~8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 수정

41 p.102 '경찰 감찰 규칙' 위로 위치 변경

42 p.82 제54조 ① 1. – 정답 수정

제한구역 → 제한지역

43 p.85 제4조 - 추가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44 p.87 제12조, 제13조, 제17조 ② - 추가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 이상 ( )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명 / 7명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 )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2분의 1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공공복리의 유지·증진

45 p.92 제17조의2, 제24조의3 - 추가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로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 )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1개월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6 p.94 제31조 ②, ③ - 추가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7 p.95 제47조 아래 - 추가

제3장 결산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월 말일**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 )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월 10일**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월 20일**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월 31일**

48 p.98~99 제16조 ③, 제22조 - 추가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 ) 이내에 하여야 한다.** 21일

②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7일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49 p.101 제12조 아래 - 추가

제13조(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표시)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의 접수·발송) 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신(電信)·전화 등의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제18조(보관) 비밀은 도난·유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장 중의 비밀 보관)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보관책임자)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비밀 보관 업무를 수행할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제24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에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27조(비밀의 반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각급기관의 장은 ( )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 2회**

제32조(보호구역) ①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하 "국가보안시설"이라 한다)이나 선박·항공기 등 중요장비(이하 "보호장비"라 한다)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밀·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 ), ( ) 및 ( )으로 나눈다.** — **제한지역 / 제한구역 / 통제구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보호구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50 p.102 제6조 ③ - 추가

제6조(감찰관의 권한)

③ 감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제출 받은 자료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51 p.104 제17조 ②, ③,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 추가 및 수정

제17조(출석요구)

② 제1항의 경우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심야조사의 금지) ① 감찰관은 **심야((　　)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② 감찰관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면 심야조사 동의서에 따른 동의를 받아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감찰조사 전 고지)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의 참여
   가. 다른 감찰관
   나.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경찰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동석
   가. 조사대상자의 동료 경찰공무원등
   나. 변호인

제20조(조사 참여)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1명의 감찰관 또는 여성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제1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료 경찰공무원등 또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제2항의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중단시키는 경우
2. 조사대상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그 밖의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④ 감찰관은 제2항의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청문보고서 등 조사서류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시 유의사항) ① 감찰관은 조사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조사시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조사시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언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성폭력·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감찰관의 징계 등) ① 경찰기관장은 감찰관이 이 규칙에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 교체,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

②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　　)하여 징계조치**한다. **가중**

52 p.104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추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　　)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경무관**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 장교
6. 국회의원

53 p.110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 - 경비업법시행령 추가

경비업법시행령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 )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 ) 전까지 (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24시간 / 지방경찰청장

54 p.117 제2조 - 수정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및 같은 법에 따른 ( ) — 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및 ( )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5 p.122 제28조 8. 아래 – 제39조의2 추가

제39조의2(포상금)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

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56 p.124 제12조, 제24조, 제25조 - 추가

제3장 보호사건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등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7 p.129~130 제7조 ①, 제8조 ①, 제9조 ① - 수정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 )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0일

5일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 )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분의 50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58 p.144 제31조 - 추가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9 p.148 제21조, 제24조 - 추가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60 p.150~151 제2조 5., 6., 7., 제5조 ①, 제6조 ④ - 추가

제2조(정의)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61 p.152 제10조, 제15조, 제17조 - 추가 및 수정

제10조(출입·조사 등)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 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 )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 5천만원**

62 p.155 제13조 - 수정

제13조(아동 등 지문 등 정보의 사전등록 및 관리)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후「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한다.

63 p.160 제9조 - 추가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4 p.163~164 제16조, 제18조, 제43조 - 추가 및 수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65 p.165~166 제2조 3. - 수정

제2조(정의)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나.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및 아동혹사
   다.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 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라. 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마.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바.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 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사. 주거·신체 수색
   아. 강요
   자. 공갈
   차. 재물손괴 등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6 p.166 제4조 ③, ④ - 추가

제4조(신고의무 등)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7 p.167~168 제8조 ③, ④, 제8조의2 ②, ③, 제17조, 제22조, 제23조 - 추가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제1호의 사유에 따른 결정만 해당한다)이 확정된 때
2.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2절 조사·심리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68 p.169 제2조 4. - 교체

제2조(정의)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나.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
   다.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
   라. 협박, 특수 협박
   마.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인신매매 및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사.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아. 주거·신체 수색
   자. 강요
   차. 공갈
   카. 재물손괴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

69 p.170~173 제8조,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2조 ⑤, 제13조, 제14조 ②, ③ - 추가 및 수정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　　).**

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70 p.173 제19조 ②, 제27조, 제30조, 제34조 ③ - 추가 및 수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71 p.173 제11조 - 수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특별자치시장·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서장

72 p.174 제33조 ③ 2. - 정답 수정

6일전 → 6일

73 p.175 제3조 1. 7. - 수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자연재난**
   나. (　　)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 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74 p.176 제14조 - 수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　　)**에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행정안전부**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　　)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75 p.180 제4조 ② - 수정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76 p.182 제18조 - 수정

제18조(검문소의 운용) ① ( ),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77 p.184 제5조 ② 아래 – 제7조 추가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78 p.186 제17조 ②, ③, ④, ⑤, 제18조 - 추가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까지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이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79 p.186 제5조 아래 – 제6조 추가

제6조(테러취약시설) 테러취약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중요시설
2. 다중이용시설
3. 공관지역
4. 미군 관련 시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시설

80 p.187 제22조 아래 - 제27조 추가

제27조(대테러 훈련 방법) ① 경찰서장은 관할 테러취약시설 중 선정하여 분기 1회 이상 대테러 훈련(FTX)을 실시해야 한다. 이 중 연 1회 이상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81 p.197 제2조 23. - 수정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 ) 미만인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13세

82 p.199 제5조 아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추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83 p.2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9조 추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30

84 p.216 제80조 ② - 추가

제80조(운전면허)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85 p.217 [별표18] - 내용 수정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제1종	보통면허		• 총중량 ( )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10톤 미만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총중량 ( )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3.5톤 이하

86 p.218 제82조 ① 3. ② - 수정 및 교체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한기간	내용
5년	① 무면허운전으로 사람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음주운전·과로등운전(과로·질병·약물)·공동위험행위로 사람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년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등운전·공동위험행위 이외의 사유로 사람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년	①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위반(무면허운전 함께 위반한 경우 포함)하여 운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② 자동차 이용하여 범죄행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운전한 경우
2년	① 무면허운전,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또는 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③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④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은 때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 중 면허증 또는 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⑤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⑥ 운전면허 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년	① 무면허운전 또는 면허정지기간 중에 자동차 등 운전한 자,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 운전한 자 ② 2~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③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결격기간

6개월	2~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즉시취득 가능	① 적성검사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② 제1종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 불가

87 p.220 제87조 ① – 수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년 / 5년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년 / 5년

88 p.223 제96조 ① – 수정 및 추가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　　)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 입국한 날부터 1년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89 p.224 제148조 - 수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0 p.226 제158조의2 위 - 제156조 추가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91 p.227~228 제163조, 제165조 - 수정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 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　　)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분의 50

1. 제16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 금액에 (　　)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100분의 50

③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92 p.230~232 제3조 ② 1.~12. - 수정 및 추가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고속도로 등 횡단·유턴·후진금지)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 )하여 운전한 경우 — **20킬로미터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 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93 p.231 제3조 ② 1. 관련판례 - 교체

관련판례

1. 교차로에서 적색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와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 신호위반 X
2.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신호위반 O

94 p.231 제3조 ② 6. 아래 - 관련판례 수정

관련판례

1.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 보행자 O**
2.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 O
3. 차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경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

95 p.235 관련판례 - 교체

관련판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특가법 도주 인정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 특가법 도주 인정
3.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 특가법 도주 아님
4.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경우 – 특가법상 도주 인정
5.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 동승자는 특가법상 도주의 공동정범 아님
6.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 특가법상 도주 인정
7.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에 해당
8.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후사경 등 우측 부분을 옆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가해차량의 좌측 후사경 등으로 충격한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다음 진행신호로 바뀔 때까지 피해자의 항의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 특가법상 도주 아님
9.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 특가법상 도주 인정

96 p.241 제10조 아래 주의 - 수정

◤주의 ①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 –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현재는 야간이라는 이유로 옥외집회금지 못함
② 야간시위금지규정 – 한정위헌에 의해 일몰부터 자정까지 야간시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자정부터 일출까지 야간시위 금지하는 것은 합헌 → 일몰부터 자정까지는 야간이라는 이류로 시위금지 못하고, 자정부터 일출까지는 야간이라는 이유로 시위금지 허용

97 p.244 제20조 ① 3. - 수정

3. 제8조 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98 p.246 아래의 관련판례 아래 - 제26조 추가

제26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9 p.253 제2조 ① 아래 - 추가

형법	① 내란목적살인죄 ② 외환유치죄 ③ 여적죄 ④ 모병이적죄 ⑤ 시설제공이적죄 ⑥ 시설파괴이적죄 ⑦ 물건제공이적죄 ⑧ 간첩죄 ◤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제외**
군형법	① 반란죄 ②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 ③ 이롭게 할 목적 반란불보고죄 ④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 ⑤ 군용시설등 파괴죄 ⑥ 간첩죄 ⑦ 일반이적죄 ◤ 단순반란불보고죄 제외
국가보안법	① 목적수행죄(제4조) ②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제5조) ③ 잠입·탈출죄(제6조) ④ 총포·탄약·무기 등 편의제공죄(제9조 제1항)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권유,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기타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는 제외

100 p.255 제12조 ⑦ - 수정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01 p.263 제4조 아래 - 제4조의2 추가

제4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2 p.264 제19조 ③ - 추가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의3·제19조·제19조의2·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103 p.269 제12조, 제13조 - 수정 및 추가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　　)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　　)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22세

2년 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4 p.271 제12조 위 - 제9조 추가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　　)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05 p.273 제4조의2 아래 - 제4조의3 추가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06 p.281 제46조 ① 10. 아래, 12. 아래 - 추가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2의2. 제33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107 p.292 제16조 위 - 제15조 추가

제15조(법원의 결정) ①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거절 결정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허가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그 주문(主文)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108 p.293 제2조 3. - 추가

제2조(정의)

3. **"아동·청소년"**이란 (　　)**인 사람**을 말한다. 24세 이하